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1

발의연월일: 2024. 7. 15.

발 의 자: 한준호·김한규·서영석

임오경 · 허종식 · 박홍배

김병기 • 홍기원 • 박상혁

한민수 · 조계원 · 강유정

정일영 · 안태준 · 김성회

김 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 업무의 공공성, 파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심의위원장)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판사의 경우는"을 "판사 및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이 된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
치 등) ① ~ ⑤ (생 략)	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u><</u> 삭 제>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u>직무를 대행한다.</u>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8조의2(심의위원장) ① 심의위
	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
	원으로 보한다.
	③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u>직무를 대행한다.</u>
	④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
	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
	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
	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도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 6. (생 략) <u><신 설></u>

② (생략)

,
1
판사 및 제18조의2제2항
<u>단사 및 제10조의 2세 2 명</u>
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이 된
<u>사람은</u> .
2. ~ 6. (현행과 같음)
7.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
<u>람</u>
② (현행과 같음)